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설명회

2003. 2. 1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www.humanrights.go.kr

2003년 업무설명회 프로그램

■ 개회 및 인사말

13:30 ~ 14:00 입장 및 자료배부

14:00 개회

14:00 ~ 14:05 위원장 인사말

14:05 ~ 14:10 행사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 2003년 업무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 설명

14:10 ~ 15:00 •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업무추진계획

 주요업무 설명(정책총괄과)

 • Task Force Team 운영계획안(정책총괄과)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법무담당관실)

■ 사업별 세부 논의

15:00 ~ 16:00 •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 추진방안(차별조사2과)

 • 인권상황 실태조사 필요과제 논의(인권연구담당관실)

16:00 ~ 16:10 휴식

16:10 ~ 18:00 •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방안(국내협력과)

 •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추진방안(국내협력과)

 • 인권시민단체와 커뮤니티 운영(국내협력과)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국내협력과)

 • 인권위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관련 인권시민단체와의
 의사소통 방안(정보화담당관실)

 • 인권자료실의 활용 등에 관한 건(인권자료실)

■ 폐회

18:00 폐회

글 싣는 순서

■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업무 추진계획 소개

I. 일반현황	1
1. 설립목적	1
2. 설립배경	1
3. 소속	1
4. 주요기능	1
5. 조직	2
6. 인원	2
7. 2003년도 예산	2
II. 2002년도 성과와 평가	3
<성 과>	
1. 2002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3
2. 위원회활동을 위한 기본 토대구축	4
3.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4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구제	8
5.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인권의식 제고	14
6.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16

< 평 가 >

1.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18
2. 인권정책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18
3. 진정사건의 처리지연, 조사처리체계 미확립	19
4. 국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기능미흡	20
5. 주요 시민인권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미흡	20
6. 기획사업의 가시적 효과 거양 미흡 등	21
Ⅲ.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	22
Ⅳ.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23
2.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전문성 제고	26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활동강화	27
4.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강화	31
5.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33
6. 국제 인권기구와의 교류증진	34

■ 주요 사업 설명

1. Task Force 운영계획(안)	37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44

■ 사업별 세부 논의

1.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 추진방안	47
2. 인권상황 실태조사 필요과제 논의	48
3. 민간경상 보조사업	50
4.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용역사업」	52
5. 인권시민단체와의 커뮤니티 운영	55
6.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6
7. 국가인권위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권단체와의 의사소통 방안	57
8. 인권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디지털화를 위한 협력방안	64

인권보호 · 신장을 통한 민주사회 실현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I . 일반현황

1. 설립목적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2. 설립배경

-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 권고('93)
- 국제 엠네스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권고('98)
- 김대중 대통령 대선 공약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포함과 새정부 100대 과제로 추진
- 국내인권시민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설립공동대책위원회”구성과 지속적인 입법활동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5) 및 발효(200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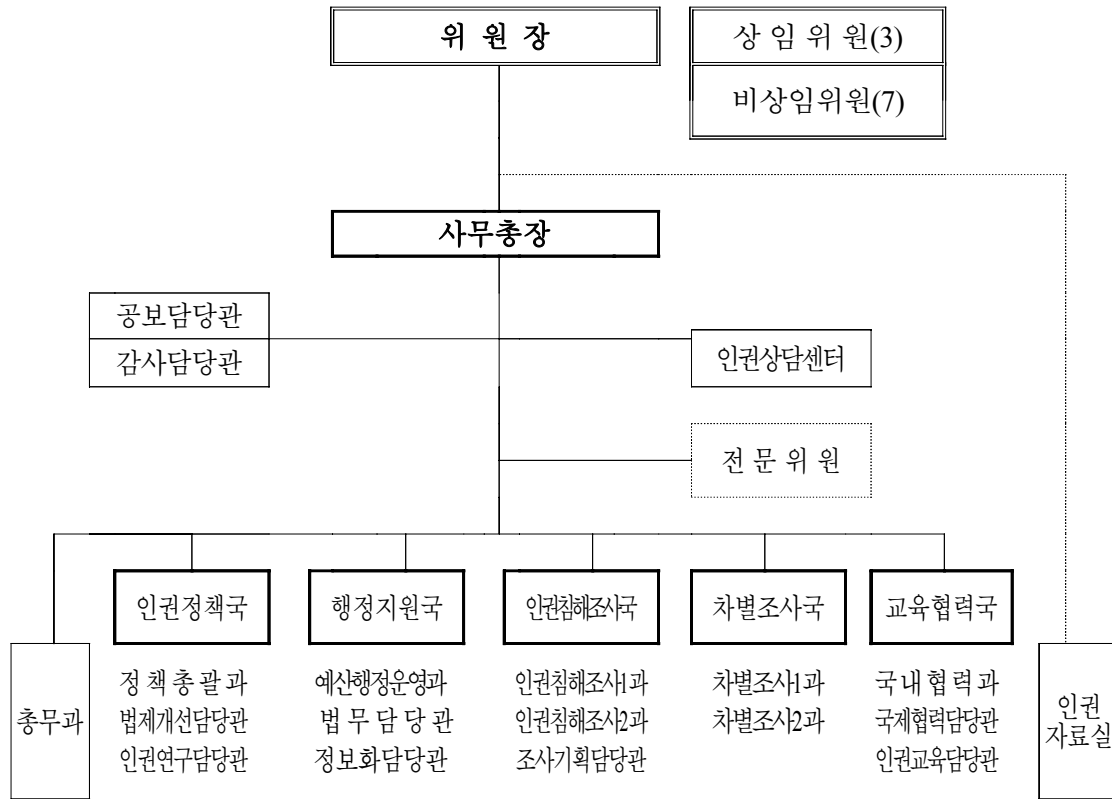
3. 소 속 : 입법 · 사법 ·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구

4. 주요기능

- 인권관련 법령 · 제도 · 관행 등의 조사 · 연구 및 개선 권고
-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자치단체 및 공 · 사 단체와의 협의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 ·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 인권관련 단체 · 기구와의 협력
-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연구 · 권고 및 의견 표명

5. 조 직

○ 5국 18과 1소속기관



6. 인 원

계	법정정원	정원외 인원	
		전문계약직	파견공무원
215인 (현원169인)	180인 (167인)	15인 (0)	20인 (2인)

7. 2003년도 예산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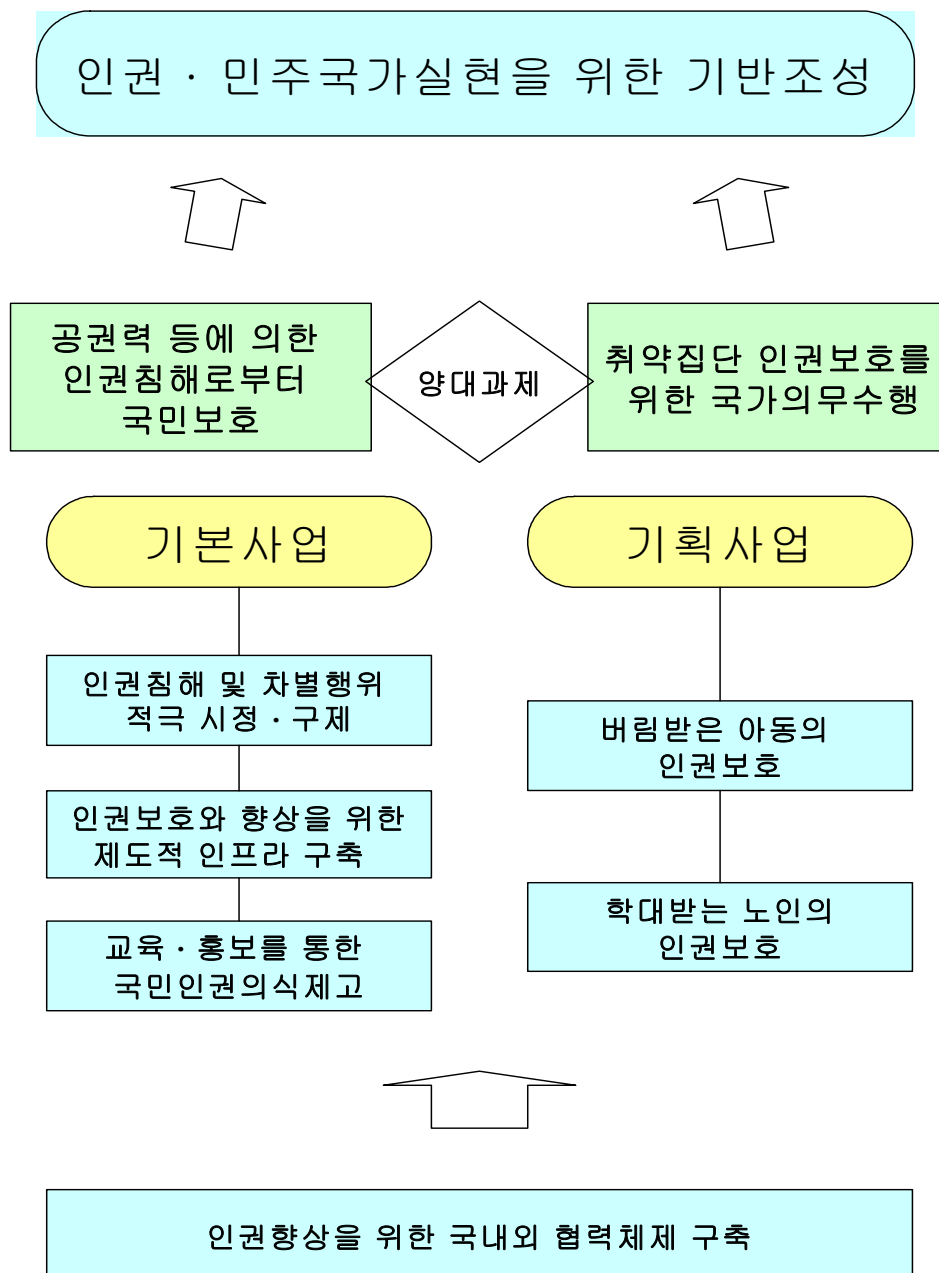
계	인건비	사업비			비고
		소계	기본 사업비	주요 사업비	
18,919	7,199	11,720	6,355	5,365	

* 2002년도 예산 : 19,203백만원

Ⅱ. 2002년도 성과와 평가

< 성 과 >

1. 2002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2.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토대 구축

- 인권전문 우수 인력 충원
 - 행정부처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공개채용 방식으로 임용
- 청사마련, 사무장비 확보 등 내부 물적 토대마련
- 진정접수 및 처리 등 위원회 업무프로세스 구축
-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정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등
-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인권종합 정보화 3개년 계획 수립 추진

3.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가.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개선 및 권고기능 강화

- ☐ 인권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개선권고·의견표명
 -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법령(조례 및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이 권고 대상
 - 권고 받은 기관장이 권고내용 불이행시 그 이유를 문서로 국가인권위에 설명
- ☐ 인권관련법령 제·개정시 법령협의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인권관련 법령 제·개정시 인권위 협의절차 준수 요구
 - 인권관련법령에 대한 개선권고 및 협의
 -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에 대한 의견제시 13건
 -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가입권고 등 정책권고 6건

《 추진실적 》

◆ 정책권고 : 6건

-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가입권고(6.4)
- 월드컵대회관련 정부정책중 인권관련사항에 대한 권고(5.28)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따른 정책권고(7.30)
-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권고(8.13)
-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9.9)
- 초·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 권고(10.28)

◆ 인권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의견제시 : 13건

- 재외동포법 개정(안) ('01.12.21)
- 테러방지법 제정(안) (2.20)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5.8)
-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 제정(안) (5.10)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5.30)
-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조례 제정(안) (7.26)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13)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안) (8.13)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9.24)
- 보험업법 개정(안) (9.25)
-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0.28)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 의견 (1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의 장애판정시 남녀차별에 대한 개정(11.25)

나. 『인권상황실태조사』 실시

- ☐ 인권상황의 개선권고와 효과적인 인권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기초자료 필요
- ☐ 실태조사 분야
 - 구금시설(교도소·구치소 등) : 불법적 징벌, 질병방치 및 의료이용권 제한, 가혹행위, 수감환경 및 처우 등
 - 다수인보호시설(아동·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 강제노동,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시설미비 등으로 인한 보호의무 방기 등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사회 보장실태, 장애인의 임용차별실태·대중교통수단 이용실태 등 등 총24개 과제 연구용역 추진

다. 인권침해·차별행위의 판단기준 및 구제지침 개발

- ☐ 신속한 진정사건처리,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및 법적 안정성 보장 등을 위해 인권침해·차별행위 판단기준 정립
- ☐ 각종 인권침해의 유형 구체화 및 구제지침 작성
 - 검찰, 경찰, 구금·보호시설, 군대 등 기관별 분류
 - 가혹행위, 부당처우, 불법체포감금, 진정권 박탈 등 행위 양태별 분류
- ☐ 주요 차별행위유형 구체화 및 구제지침 개발
 - 장애인임용차별, 외국인노동자 고용차별,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등
 -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기준개발 전문가 워크숍 개최(15회)
 - ※ 현재 판단기준 및 구제지침 개발중

라.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 등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향상을 위하여 주요인권조약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UN최종평가서에 의거, 국내법·제도 점검

○ ICC 가입권고,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의견제출 및 고문방지협약선택 의정서(안)에 찬성표결 권고 등

【 주요 인권조약 예시 】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고문방지협약
- 아동권리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 이행방안 수립 촉구

□ 국제규약관련 정부보고서 및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 활동보고서에 대해 의견제시

《 추진실적 》

- ◆ 재외동포법 의견 제출('01.12.21)
- ◆ 인종차별철폐협약 의견 제출 (1.31, 6.26)
- ◆ 고문방지협약 의견 제출 (2.26)
- ◆ ICC 가입 권고 (6.4)
- ◆ 장애인권리협약 유엔특별위원회 보고서(멕시코초안) 의견제출 (7.18)
-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초안 의견제출 (8.28)
- ◆ APF 법률자문회의 인신매매관련 보고서 의견제출 (10.15)

마.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준비 및 보고서 발간 등

- 체계적인 인권증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인권정책 중장기 비전과 과제 및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P) 수립 추진
- 취약한 국내 인권연구기반 확충 및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해 인권 논문 공모사업 실시
- 우리 인권현황에 대한 종합지표인 연간보고서 매년 3월 발간추진
- 인권백서는 2-3년 주기로 발간, 최초 인권백서는 2003. 12월 발간추진

4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구제

가. 신속한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업무수행역량 강화

< 진정 접수 및 상담·안내 현황 ; '01.11.26 ~ '02.12.31 >

(단위 : 건)

총 계	진정				상담			안내			
	소계	방문 (면전)	전화	이메일 우편 팩스	소계	방문 (면전)	전화	소계	방문	전화	민원회신 (아우팩)
16,265	3,599	1,242 (556)	403	1,954	3,249	1,074 (307)	2,175	9,417	815	8,070	532

☐ 진정처리시스템 구축

- 『상담및진정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진정처리의 편의성 확보
- 진정처리절차의 표준화로 처리기간 단축

☐ 현장중심의 진정접수 및 조사체계 확립

- 구금·보호시설 등 인권취약분야에서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수용자의 『면전 진정』 요구시 신속하게 현장방문상담, 진정접수 및 기초조사 실시

< 면전진정 처리현황 ; '01.11.26 ~ '02.12.31 >

(단위 : 건)

신청	철 회	방문 실시		방문 미 실시
		진정 접수	상담종결	
1,243 (100%)	241 (19.4%)	556 (44.7%)	307 (24.7%)	139 (11.2%)

☐ 조사관의 전문성·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대한 실무연구 발표 실시('02. 6 ~ 7월)
- “국제인권보장제도상의 권리구제절차와 특징” 등 14개 강좌에 대한 외부 강사 초빙 『인권침해행위 조사·구제실무과정』 교육실시('02. 9 ~ 12월)
- ‘B형간염보균자의 채용차별’ 등 13개 차별행위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사례 토의 실시('02.4~6월)
- ‘차별의 이해’ 등 14개 강좌에 대해 외부강사 초빙 차별행위연구과정 운영 ('02.7~11월)

나.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 집중감시·시정

- ☐ 국가기관, 구금·보호시설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에 진정가능

< 진정사건 접수현황 ; '01.11.26 ~ '02.12.31 >

(단위 : 건)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3,599 (100%)	2,834 (78.7%)	190 (5.3%)	575 (20%)

- 인권침해관련 진정대상으로는 구금시설 1,113건(39.3%), 경찰 839건(29.6%), 검찰 300건(10.6%), 기타 582건(20.5%) 차지

< 진정사건 접수현황 ; '01.11.26 ~ '02.12.31 >

(단위 : 건)

계	검찰	경찰	구금시설	군관련기관	보호시설	기타
2,834	300	839	1,113	110	34	438
(100%)	(10.6%)	(29.6%)	(39.3%)	(3.9%)	(1.2%)	(15.4%)

* 주요 진정대상별 진정사유

- 구금시설 : 징벌남용, 가혹행위, 의료조치 미비, 서신·접필제한, 교도관의 폭언 등
- 경찰 : 불심검문, 불법구금, 위협적인 언행, 피의자 신문시 폭언,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의무 위반, 폭행·가혹행위 등
- 검찰 : 공소권 남용, 폭행·가혹행위, 편파수사 등

□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부산 만덕정신병원(5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 구금시설의 의료환경 및 대용구금시설 운영실태 방문조사
 - 대구교도소 등 구금시설 5개소 및 육군교도소 등

【 검찰·경찰관련 진정사건 】

- 정신과 진료정보를 이용한 수시적성검사 중지 및 관련자 징계권고 (7.25)
- 구로경찰서 유치장 알몸신체검사 관련자 인권교육 권고 (10.14)
- 시흥경찰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10.28)

【 구금시설관련 진정사건 】

- 울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01.12.28)
- 청송교도소 거식증환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권고 (6.27)
- 진주교도소 AIDS환자 수용자 등의 면전진정방해에 대한 소장 등 관련자 징계권고 (8.26)
- 부산교도소 불교교리공부를 위한 재생전용 카세트 사용 허용 합의권고 (10.10)
- 수원구치소 의료조치 미흡에 따른 수용자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 및 법률구조 요청 (10.28)
- 광주교도소 징벌혐의자 과도한 권리제한관련 규정 개정 권고 (12.9)

【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청와대 통행권 침해관련 사과 및 재발방지 권고 (10.18)
- 발산역 장애인사망관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고방지대책강구 등 권고 (11.18)
- 조선인 동포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권고 (8.9)
- 부평구청 부당 인사조치에 대한 합의권고 (11.27)

【 긴급구제조치 】

- 진주교도소 AIDS환자에 대한 형집행 정지 건의 및 외부병원 이송치료 권고 (4.23)
- 중국 동포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12.9)
- 러시아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권고 (9.12)

【 과태료 부과 】

-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관련 기자폭행사건 조사에 불응한 미2사단에 과태료 부과 (8.16)
- 청송제2교도소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10.31)

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 18개 사유에 의하여 고용관계,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 관계에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 ☐ 차별사유별 사건현황(2002.12.31)

구 분	계	사회적 신 분	장애	출신 국가	평등권 침 해	병력	성별
건 수	190	42	32	19	36	12	9
구성비 (%)	100	22.1	16.8	10	18.9	6.3	4.7

구 분	출신 지역	종교	전과	나이	사상	성적 지향	기타*
건 수	5	6	6	5	4	4	10
구성비 (%)	2.6	3.2	3.2	2.6	2.1	2.1	5.4

주) * 기타 : 용모, 인종, 피부색, 혼인여부, 가족상황 등

- ☐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대구가톨릭대의 신입생 합격처리상 연령차별’ 등 7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시정권고
- ‘14개 국공립대학교의 교수임용에 있어 나이차별’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및 시정권고
- ‘인제대학교의 교수임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등 2건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당사자간 합의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합의종결 처리
-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실시 : 화성외국인보호소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부설 외국인보호소

【 시정권고 사례 】

- 대구가톨릭대의 신입생 합격처리상 연령 차별 : 탈락 신입생 합격 처리
-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모집에 있어 나이 차별
 - ☞ 강릉대학교 등 14개 국공립대학,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정권고
-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시 장애인 차별
 - ☞ 제천시 신규임용시 장애인 특채
- 크레파스 색상 피부색 차별
 - ☞ '살색'을 '연주황'으로 개칭(기술표준원)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상 2년제 원격대학 수료자 차별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보건복지부)
- 구금시설내 소수종교인(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종교집회 차별
 - ☞ 법무부에 시정권고
-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국무총리)

【 합의종결 사례 】

- 인제대학교의 교수임용상 장애인 차별 당사자 합의로 교수채용
- 고려대구로병원의 의료보호대상자 입원거부
 - ☞ 당사자간 재발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합의

5.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인권의식 제고

가. 수사기관 종사자·군인·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진정사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의식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 고려

☐ 순회 인권교육 추진

- 수사기관 종사자, 군인, 공무원, 교사 등 대상
- 인권법령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자율적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

☐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인권교육강사 은행 구성·활용

- 인권동화책, 영상교육자료 등 적극 활용
- 인권교육강사 DB 구축·관리

《 추진실적 》

- 검·경 등 관련 강의안 제작 및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104명)
- 검찰·경찰·교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 경찰수사보안연수소 등 총 27회, 연인원 3,435명
-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발간
 - 검찰, 경찰 및 교정분야 기본교재 및 직무지침서 발간
 - 공무원 인권교육 영상물(교정분야) 제작
- 아동·노인 인권동화책 발간

나. 각급 교육·연수기관 인권교육과정 개설

- ☐ 각급 학교 교과서 등을 분석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인권내용 강화
- ☐ 수사기관 등 각급 연수과정 및 대학·사회교육기관의 인권강좌실태 파악 및 인권교육과정 개설협의

《 추진실적 》

- ◆ 전문가 28인이 초·중·고 교과서 모니터링 중
 - 제7차 교육과정 인권내용 분석 :
 - 인권관련 부정적 내용 교육부에 수정권고(13개항)
- ◆ 인권강좌 개설협의
 - 각급 교육·연수기관 인권교육과정 개설 추진
 - 인권강좌개설을 위한 경찰·검찰·교정·군관련 교육훈련기관 등과 협의
 - 국·공립 23개 법과대학과 강좌개설 협의중
 - ※ 인권법관련 강좌개설 대학(7개), '03학년도 강좌개설확정대학(2개)

다. 인권문화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실시

- ☐ 인권의식고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인권영화·만화 제작
 - TV·라디오·지하철 광고 등 제작
- ☐ 국가인권위원회 뉴스레터 발간

《 추진실적 》

- ‘차별’을 주제로 6인의 감독이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 제작
- 인권만화 제작 및 위원회 TV광고 실시
- 전국 시·도, 구급시설, 대학 등에 진정안내 포스터 16,730매 및 리플렛 456,830매 배포
- 위원회 CI(Corporate Image Identity), 소개 국·영문 리플렛, 브로셔등 제작
- 위원회 출범 1년간 활동 사진과 국내 인권 사진작가들의 주요 작품 등을 전시, 슬라이드 제작 상영
- 보도자료 총104건 작성 및 배포(2002.11.30 현재)

6.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가. 시민·인권 단체와의 협력 강화

- ☐ 인권법령·제도 등 개선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적극 수렴
 -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의 활성화
- ☐ 인권·시민단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 인권단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총 15회 개최, 139개 단체, 192명 참석
 -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방문조사에 시민단체와 협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인권단체에 의뢰
 - 각종 인권정책 토론회 활성화 등을 위해 『배움터』 시설 개방

나. 인권 관련 국제 교류협력 강화

☐ 인권기구 가입

-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 Asia Pacific Forum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 2002. 11. 11. 제7차 연례회의에서 승인

☐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 방문·교류

- 외국의 국가인권위 등 각종 인권기구 방문·교류
- 인권관련 자료수집 및 직원·도서·정보 등 상호교류협정체결 추진

< 주요 국제교류현황 >

- 캐슈미르통제소 지역의 인권유린중단 촉구 등 국제인권기구·단체와의 연대 서한 발송(16건)
- UN인권고등판무관실 등 주관 국제인권교육 참가 (10월, 2명)
- APF주관 조사관 교육 참가 (11월, 3명)
- 호주 등 국가인권기구 방문, 선진 인권정책 및 법·제도 연구
-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모니터링
 - APF 연례회의, 워크숍, 네덜란드 국제교정회의 등
- 국제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등 국제 인권운동 공조 및 협력 체제 구축
- 국제인권협약, 정부 및 민간단체 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제인권협약 이행집 발간

< 평 가 >

1.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인력부족으로 인한 본연의 역할 수행 다소 미흡
 - 정부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사무처 구성 지연, 인권전문가 채용에 있어서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 직제령 협의 당시 합의한 전문계약직, 공무원 파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인권위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Task force Team의 구성·운영이 곤란
 - 또한 지방사무소가 부재한 가운데 출범 원년 폭주하는 면진진정 접수에 사무처 전 인력이 동원
- 그리고 인권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한계 등으로 인하여 기각 또는 각하 처리 사건이 누증

2. 인권정책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에 있어서
 - 우선순위 선별기준 미비 및 국가보안법, 과거청산 등 이른바 우리사회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해결노력이 부족
 - 인권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고 시의적절한 현안과제의 발굴 및 대응노력이 다소 부족
- 예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SOFA 개정문제 등

-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선정시
 -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어 전략적 사고에 근거한 기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무상 문제 위주의 과제 선정
- 진정사건 내용 분석, 인권침해·차별행위 관한 일반지침 제정의 경우는 진정사건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곤란
- 기타 인권논문 공모사업은
 - 공고기간이 짧고 공고방법이 제한되어 다량의 우수 논문이 접수되지 않음
 ⇒ 다만, 출범원년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제정 문제, 산업연수생제도 등에 대한 권고안, 그리고 월드컵 대회 기간중 한시적으로 운영한 인권현장확인반 활동 등 긍정적인 평가 가능

3. 진정사건의 처리지연, 조사처리 체계 미확립

- 조사인력에 비해 과중한 진정사건 급증 등으로 인한 사건처리지연, 회신지연에 따른 진정인 불만 증가는 인권위에 대한 여론악화의 주 요인으로 대두
 - ⇒ 다만, 선례 및 경험부족, 조사권의 한계 등 어려운 조사여건 하에서도 수사기관 및 구금시설관련 진정사건 처리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교수모집 차별행위 관련 시정권고 조치 등을 통하여
 - 수사기관 스스로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자제 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 피의자 인권보호 등 수사관행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
 - 관행적인 차별행위 시정에 기여

4. 국민인권익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기능 미흡

-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내실화 미흡 및 대상별 모범강의안 중 군대분야 지연되었고 인권동화책 발간과 관련, 제작일정 단축으로 각계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양한 검증과정 미흡
-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 분석과 관련, 분석연구진의 인권지식 및 의식 편차로 통일성 미흡
- 또한 소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정보 미입수와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사전 기획에 의한 보도가 부재
⇒ 다만, 검찰·경찰·교정·군 분야 인권교육 토대 마련, 교과서의 인권관련 부정적 내용을 교육부에 수정권고 및 인권감수성 측정지표 개발 및 교사 인권의식조사 연구용역 실시 등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며,
 - 인권영화, 인권만화, TV광고 등은 비상업적 주제인 인권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는 등 각각의 문화 영역에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 제공

5. 주요 시민인권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 미흡

- 회의 운영, 직원채용과정 등 위원회 운영 및 정보 공개의 투명성 논란 등과 관련, 일부 인권사회단체의 위원회와의 협력 거부 선언이 있었으며,
- 『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와 관련, 관련부서의 참여도 저조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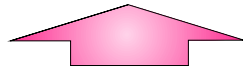
-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등 유엔 주관 국제인권회의는 사무처 출범 지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참가 지위 미확보 등으로 참가 못함
- ⇒ 다만,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 간담회, 토론회 등의 개최,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 등 인권사회단체와의 관계유지 노력은 지속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가입으로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두보 마련
- 또한, 국제인권협약 정부 이행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제시·반영함으로써 각종 국제인권협약의 정부이행상황에 대한 감시활동을 충실히 하였음

6. 기획사업의 가시적 효과 거양 미흡 등

- 주제 선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검토 부족
 - 문제의 사회적 논의수준의 성숙도, 주제 관련 옹호집단의 성숙 정도 등을 반영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 거양 곤란
 -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자를 기획사업으로 하였을 경우 반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측됨
- 기획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인권위 전체의 공감대 형성부족
 - 특히 Taskforce Team의 가동조건인 전문계약직이 충원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중의 하나임
- ⇒ 다만, 버림받은 어린이와 학대받는 노인 문제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인권단체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크지 않은 사안으로 인권위가 금년도 기획사업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Ⅲ.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

비 전	인권보호 · 신장을 통한 민주사회 실현
--------	-----------------------



정 책 목 표	인권옹호 · 신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회적약자 · 소수자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문화 · 환경 조성	국내외 인권 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	-----------------------------------	------------------------	------------------------	------------------------------

추 진 전 략	1	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2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 · 전문성 제고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 구제활동 강화
	4	국민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5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6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증진 및 국제활동 활성화

IV.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가.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P) 수립 추진

-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 NAP의 수립을 통해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단계적·계획적으로 추진
 - 특히, 실효성 있는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보유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
- 국가기관간 협의체계 제도화
 - 인권위 주관으로 인권관련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추진(시행령 개정 등)
 - 각 부처에 인권업무 담당관 설치, 관계기관회의 절차 규정 마련 등
- 금년 중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NAP 시안 마련,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 확정

나.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 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특정지역,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실태조사
 - 일부 영역에 대하여는 용역사업으로 추진 검토
- 외국의 사례조사 :선진 각국의 입법사례 및 실태조사

- 관련 국가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청와대 담당비서관 등 참여로 대통령공약 이행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추진
-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폭넓은 의견수렴과 법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제3회 워크숍에서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결정

다. 인권 관련 법령 종합조사 단계적 실시

- 인권관련 법령의 체계적·종합적인 정비 작업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법령 개선방안 도출 필요
- 형사관계, 사회권, 차별분야 등 국내 인권관련 법령 조사, 연구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 특히 진정사건을 통한 적용실태 파악·조사 연구
- 선진법제인 유럽인권법원의 형사관련판례 조사·분석
 - 유럽인권협약 : 제3조(고문의 금지), 제5조(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7조(죄형법정주의) 등에 대한 판례의 조사·분석

라. 주요 인권현안 적극대응

- 출범 2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권고 필요

○ 주요 인권문제 중 우선 3개 과제에 대하여 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추진

① 국가보안법

②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③ 비정규직 문제

○ Task Force Team의 업무수행

-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
-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연구 또는 워크숍 등 실시
-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사회단체 및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Task Force Team 구성방안

- 상임위원(팀장), 위원, 사무처 직원(실무간사) 및 전문가로 구성

마. 인권 상황실태 조사 실시

○ 인권상황의 개선과 효과적인 인권정책 등을 위하여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

○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선정 기준

- 전국적으로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 국민인권의식실태 및 사생활보장현황 등 실태조사
-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군대내 교도소, 구금보호시설 등을 위주로 실태조사 실시
- 현안 중심의 조사사업을 지양하고 장기계획 수립하여 추진

○ 내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단위 장기 조사과제 우선실시

-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의 공동연구의 확대를 지향

바. 인권침해 · 차별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침제정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진정사건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 · 차별행위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근원적 예방책 강구필요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유형분류, 유형에 따른 판단기준 마련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원인분석과 예방지침(안) 마련

2.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 · 전문성 제고

가. 화상 인권상담시스템 구축

- 일반인들이 더욱 쉽게 권리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 · 진정 접수 경로 외에 보다 다양한 경로 확장 필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인터넷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 특히 관련법규 및 보안성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권상담 뿐만 아니라 화상 진정접수시스템으로 확대구축

나. 지방순회 인권상담 활동전개

- 지방순회 인권상담 등을 통하여 지방 주민들의 인권위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

- 5개 지방대도시 순회 인권상담 실시
 - 임시 인권상담센터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지방언론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지역인권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활동 강화

가.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적극적 구제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불만 팽배
 - 검찰·경찰관련 진정사건 조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고착화된 불합리한 수사절차에 대한 법령, 제도 및 관행 개선과제 도출
 - 경찰서유치장 운영실태 현황 분석을 통한 장·단기 정책개선과제 발굴
- 구금시설내 열악한 수용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 구금시설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연속징벌에 따른 수용자의 정신·육체적 인권침해 진정사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법령, 제도 및 관행 개선 유도
 - 보호감호제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진정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 2002년말 현재 보호감호제도관련 진정 115건 접수
 - ※ 주요 진정내용 : 사회보호법 폐지, 감호자의 근로수당·가출소 심사·수용환경 개선 등

- 전국 대용구금시설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수용자의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한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

※ 대용구금시설

- 구치소 시설부족으로 구치소 대신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시설
- 2001년말 현재 충주·통영·해남 등 전국 14개 경찰서에 1,045명 수용

○ 군 사법체계와 군대내 인권상황

- 군 조직의 폐쇄성과 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된 각종 사망사고에 대한 의혹의 진상 규명

※ 군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 ('02.12.31. 현재)

(단위 : 건)

대상기관	계	군 검찰	군 헌병	기무사	기 타
진정사건	110	4	41	6	59

※ 군내 사망사고 : 33건(육군 26, 해군 6, 공군 1)

※ 주요 진정원인 : 군대내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군 복무제도 개선, 군구금시설내 처우 및 환경 개선 등

- 대표적 군대내 사망사고 집중조사를 통한 군 수사 등 군 사법체계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 유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다수인보호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이 있음
-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상황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이들 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차적으로 추진

○ 직권조사를 통한 능동적 구제 기능 활성화

- 진정사건 조사와 함께 장애인·부랑인·외국인근로자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와 주요 현안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법령, 제도 및 관행 개선
- 사회적 인권취약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점검·이행촉구를 통한 지속적 사회적 관심 유발

나. 5대 차별행위 진정사건 조사·시정

※ 5대 차별 : 성차별, 장애인, 학벌,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 성차별

- 고용관계 등에서 여성차별
- 관련법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및 남녀 불평등 요인을 해소
- ‘기혼여성에 대한 채용탈락’ 등 진정사건에 대한 시정권고와 병행하여 실태 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령, 제도 및 관행 개선

○ 장애인 차별

- 고용관계, 교육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 장애인 차별
- 관련법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을 보장
- ‘대형운전면허 발급에 있어 장애인 차별’ 등 진정사건에 대한 시정권고와 병행하여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령, 제도 및 관행 개선

○ 사회적 신분(학벌,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에 의한 차별

- 고용관계 등에서 학벌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유로 차별
- 학벌에 의한 차별 시정을 통해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차별을 시정

- '교사자격증 취득에 있어 독학사 차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등 진정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와 병행하여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령, 제도 및 관행 개선

○ 외국인 노동자 차별

- 고용관계 등에서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노동자 차별
- 외국인 노동자 차별시정을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 '직업재활훈련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등 진정사건에 대한 시정권고와 병행하여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령, 제도 및 관행 개선

다. 채용상 차별 관행 사전 예방

○ 사후적 시정·구제로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채용과정상 차별행위 원천적 해소 추진

- 차별행위 진정사건 173건 중 106건(60.3%)이 고용영역에서 발생

○ 2002년도 하반기에 3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관행상 고용차별 직권조사 추진('03. 1월중)

- 성별, 학별(학력), 장애여부, 출신지역 등 개인능력 및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개인신상, 신체사항, 가정환경 등에 의한 차별행위 중점조사
 - 개인신상 : 성별, 학별(학력), 장애여부,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 신체사항 : 키, 몸무게, 혈액형, 시력 등
 - 가정환경 : 부모·형제 등의 학별, 근무처, 직위, 월수입 등
- ※ 채용에 있어서는 공약사항 5개 차별시정 영역중 성별, 학별, 장애인 차별에 대해 기 조사중

- 2003년도 주요기업 채용관련 자료(입사지원서, 면접질문서 등)를 수집·분석하여 차별행위 종합분석('03. 5월중)

4.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가. 인권 교육발전 종합프로젝트

-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5-2004)의 핵심적인 권고사항으로 동 계획기간 종료 전에 인권교육 국가적 실행방안 수립 필요(국가인권위원회법제 26조및시행령15조6항1호)
- 운영형태 : 용역 발주 및 자체 정책과제 산출
 -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정책과제 도출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 각급 학교·지역사회·직장·국가기관 등 각 영역의 인권교육 현황 파악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나. 인권전문교수요원 양성

- 경찰 등 법 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권교육 강사단의 확대 및 질적 강화 필요
-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참여에 따른 일체 경비 지원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및 기존 인권교육 강사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생 모집과 훈련
 - 200명 정도의 교수요원 양성을 목표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확산

- 국민 인권 보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후 구제 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8가지 유형의 차별 행위 예방 및 범국민적 인권 의식 확산 도모
 - 인권 사진집, 인권 애니메이션, 인권 포스터 제작 배포
-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인권분야 학술연구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인권관련 학술연구 지원 및 연구 성과의 사회적 공유와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논문공모사업 실시
-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위 주요정책소개, 진정 사건, 인권위 소식 및 주요 인권이슈 등을 포함한 뉴스레터, 이메일진등 정기간행물을 발간 학교, 병원, 지하철 등 폭넓게 배포
 - 위원회 활동 및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능동적·지속적·정기적인 홍보필요

라.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 인권문화제

-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인권옹호와 존중을 재 다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홍보
- 인권공모전(어린이그림전, 표어 및 포스터 등), 인권전시회(사진 및 만화), 인권영상전(영화 및 애니메이션) 추진

마.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대 언론안내서 발간

-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피의자 혐의사실 유포 등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예방 등을 위한 ‘대 언론 인권안내서’ 필요
- 추진 사업내용
 -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각 주제별 전문 인권단체에 언론모니터링 의뢰
 - 언론수용자운동 시민단체에 의뢰, 방송 및 신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 결과물 등을 종합하여 ‘언론 안내서’ 발간

5.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가. 인권시민단체 활동사업 지원

- NGO 전문성 제고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인권신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권활동 발굴 확산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시민단체의 인권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나. 단체 활동가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권단체 상근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기회 제공
 - 수도권, 지방 3개 영역별(대전·광주·대구) 상근 활동가 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다. 인권의식제고를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 인권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천 가능한 대중성 있는 실천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아동, 노인 차별행위 18개 분야 등
 -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센터 개설 및 홍보프로그램
 -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실천프로그램
 -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6. 국제 인권기구와의 교류증진

가.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강화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APF 회원으로 가입(2002.11월)하게 됨에 따라 회원 국가인권기구간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 상호 교류활동 강화
- APF 이사회 이사 및 APF 법률자문회의의 위원 지명 등을 통해 APF 의 국제 활동에 한국 인권위의 참가 활성화

나. UN 등 국제인권기구·단체 주관 국제회의 참가 활성화

- UN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인권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정부 및 각국의 인권보호와 증진 및 국제협약이행상황 모니터링
- ESCR(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Net 회의 등 NGO 주관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주요 국제인권현안에 대한 공동 토의 및 공조체제 구축

다.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사업

-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상호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 국내·외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 모범 사례 벤치마킹
- 2003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칸디나비아 인권기구 및 유럽인권재판소 방문 추진
 - 남아공 인권위는 헌법상의 기구, 흑백갈등문제 등 인권문제 처리경험이 풍부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고자료 제공
 - 스칸디나비아 옴부즈만은 비슷한 형태의 유럽, 남미지역 인권기구 연구에 많은 도움예상
 - 유럽인권재판소의 정교하고 논리정연한 판결문 등 파악

주요 사업 설명

Task Force Team 운영계획(안)

□ 운영목표 및 필요성

-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인권 현안중 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
-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 관계 법령 개폐, 제도·정책 개선 권고 등 포함

□ 구성 및 운영방식

- 과제선정
 - 주요 인권문제 및 현안사항중 Task Force Team 운영으로 추진할 과제 선정
- 팀구성
 - 과제별로 팀장(상임위원), 팀원(비상임위원포함), 실무간사,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사무처 인력은 가용 실무인력범위(최대 3인)내에서 지원
- 운영방식
 - 과제별로 6개월~ 10개월의 기간 확보하여 연구용역, 공청회 또는 청문회, 워크숍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

□ 2003 Task Force Team 과제 선정 (2003. 1. 7. 제3차 워크숍)

- 국가보안법 개폐
- 사회보호법 개선
- 비정규직노동자 차별 해소
- ※ 중점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

□ Task Force Team 운영 세부추진계획

- 과제별 구체적인 업무 선정(2월중)
- 실태조사 (2월 ~ 5월)
- 외국의 사례 조사 (2월~3월)
- 기존 법제 비교연구 및 실태비교 연구를 통한 개선대안 시안 마련
(6월 ~ 8월)
 - 시안마련 -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연구 또는 워크숍 실시
 - 시안에 대한 보고
-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8월~9월중)
 - 인권사회단체,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최종시안 마련 및 활동 평가 (10월~11월중)
- 결과 보고 및 공표 (11월중)

※ 3대 TFT 과제 수행 필요성 및 쟁점

□ 국가보안법 개폐

가. 필요성

- 국가보안법은 운용과정에서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 인권NGO 등으로부터 수차례의 개폐 권고를 받음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는 총 1,045명 (2002.12.31 기준)이며 현재 수배자 수도 170여명에 이르고 있음
- 특히, ‘한총련’ 활동 관련 구속자의 경우, 평균 형량이 1~2개월 정도로서 무리한 법집행에 따른 ‘학생전과자’ 양산이라는 비판
- 현재 국가보안법폐지안(2000.11.27)과 개정안(2001.4.27)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대체입법 주장

나. 쟁점

- 유지론 입장
 - 북한형법, 노동당규약과의 형평성
 - ‘국가안보’ 상 북한은 ‘주적’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
 - 이적단체구성죄, 간첩죄 등의 수사단서 확보상 존치 필요
 -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법률제도의 실체적 효과를 무시한 관념론적인 접근방법임
- 폐지론 및 개정론 입장
 - ‘국가안보’를 구실로 법을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해 헌법상의 기본권과 국제 인권기준을 과도하게 제한
 - 특히, 이적단체 구성 관련 조항(제3조)과 표현의 자유 관련 조항

- (제7조) 등이 주요 문제점(구속자의 92%가 7조 위반)으로 논의
- UN회원국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주적’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 남북 관계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반통일적’ 접근임
 - 법이 아닌 행정기관(통일부)의 북한접촉허가여부가 합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배치
 - 일부조항(제2, 3, 7, 10, 19조 등)에 대한 위헌 시비 지속

□ 보호감호 제도 개선

가. 필요성

- 보호감호 문제는 그동안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중처벌 및 인권탄압을 문제시하며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전면폐지를 주장
- 열악한 시설환경, 행형법에 의한 수용자 관리, 낙후된 교육프로그램, 근로보상금 부족, 엄격한 가출소 기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여전히 높아 ‘재사회화 교정기관’으로서의 본래 목적 퇴색
-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에서는 본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예정

나. 쟁점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보호감호처분은 그 형식과 내용, 효과 면에서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옴

○ 적법절차의 원칙

- 보호감호 처분시기가 피고사건에 대한 형과 동시에 선고됨(1년마다 가출소심사가 있으며,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이 운영되는 보호감호 제도하에서, 가출소여부 결정주체가 법원이 아닌 법무부산하 '사회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시되는 것임

다. 국제현황

- 선진국의 형법 중 상습범과 누범에 대해 가중처벌과 보안형을 동시에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 독일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적용률이 극히 낮아 거의 사문화됨
- 외국에서 일정한 행정법상 보호감호 조치는 대개 무거운 형벌로써 사회보호의 목적을 충족시키거나 치료처분 등을 통하여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보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호감호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라. 국내현황

- 2002. 10.~11.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벌여 보호감호제도의 운영개선(이중처벌 금지 및 근로보상금 인상)을 요구
- 2002. 12.31. 현재 2,834 건의 인권침해관련 진정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1%에 해당하는 115건이 사회보호법 관련 진정
- ※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인원 현황
 - 2003. 2. 5. 현재 청송 제1,2보호감호소에 1,700여명 수용중

□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가. 필요성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문제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사회권규약 제7조 등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자유 보장 규정
- 1984년 ILO의 고용정책 권고(The Employment Policy n°169)에서 회원국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정규부문에 흡수할 것을 권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문제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나. 쟁점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차별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인권 보호 기준 위배 여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 비용과 이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주장에 대한 반론 및 대안

다. 국제 현황

- “노동에 있어서 근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과 그 후속조치들(1998년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채택)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계약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역의 금지, 직업과 고용에 있어 차별의 금지 등
- UN경제사회이사회는 사회권규약에 관한 3차(2006년) 정부보고서 제출 시,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을 상세히 언급할 것과 3차 보고서 제출 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 수준으로 개선할 것 권고 (E/C.12/1/Add.59 2001. 5. 1.)

라. 국내 현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2)

구 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체 근로자 수	737만명 (54%)	626만명 (46%)
월평균 임금	96만원	182만원
사회보험 가입률	20~25%	95%
주당근무시간	45.5시간	44시간
퇴직금·시간외 수당 적용율	10~14%	77~93%

- 현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되어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고, 4대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 비정규직 확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 청원(2000.12.)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I. 추진배경

-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년 중점사업이며, 1월 14일 인수위 업무협약에서 그 추진 내용을 밝힌바 있음
-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사항으로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바 있고, 특히 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를 5대 차별시정 대상을 포함하여 1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된 차별금지법의 시안을 마련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

II.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 발족

1. 추진위원의 구성

-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위원은 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에서 4인, 학계에서 3인, 법조계에서 변호사 2인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4인, 사무처 4인 등 총17명으로 구성하였음

2. 추진 계획

- 1월 :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발족
- 2월 : 국내 · 외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완료
- 5월 : 차별금지법 시안 작성 완료
- 6월 : 추진위원회 · 정책소위 및 전원위원회 시안 심의 · 의결
- 7월 : 유관단체, 유관기관, 법조계, 학계 등에 대한 의견조희
- 8월 :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8월 :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시안 보완
- 9월~11월 : 차별금지법안 정기국회 상정 및 심의 · 의결

사업별 세부 논의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 추진방안

(차별조사2과)

I. 기본 개요

1. 목적

- '03년도 인권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상반기 실시)
- 지방순회 인권상담 등을 통해 지방주민들의 인권위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 국민 가까이 다가가는 인권위 위상 정립
- 상담·홍보와 함께 지역인권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지역인권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 기관의 인권 감수성 제고

2. 세부 내용

- 사업기간 : 2003.4 ~ 2003.5
- 운영지역 :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5개 대도시
- 운영내역
 - 임시 인권상담센터 설치 운영(Bus Tour)
 - 언론, 지자체 등 관공서 및 지역인권시민단체를 통한 홍보실시
 - 지역인권시민단체 및 지역 구금·보호시설 기관장 등과의 간담회개최
 - 지역 주요인권단체 및 구금·보호시설 등 현장 방문

3. 추진 일정

- 2. 11. : 위원회 업무설명회를 통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 3 ~ 5월 : 계획안 수립, 해당지역 단체와의 협의 및 시행

II. 주요 논의사항

- 캠페인 관련 지역 시민단체 협조 요청사항
 - 인권시민단체가 참여 할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 제안
 - 인권위와 지역 인권시민단체간 역할분담 방안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연구담당관실)

1.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 내·외의 지식기반 구축
- 우리나라의 인권실태 파악을 통하여 제도 개선에 기여
-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인권실태 자료 확보

2. 총 예산

- 84,000만원

◆ 발주 확정 과제 소요 추정 예산 : 59,000만원

분 류		주 제		
기본사업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구금시설 교도관 인권의식 조사		
		군 인권실태조사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책 연구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요 인권 현안	TFT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연속사업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		
부서업무		인권 침해 지침 제정	대법원 판례 분석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군대, 검찰, 경찰 법령 및 내부규정실태조사	
			교정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법령 및 내부	
			규정실태조사	

◆ 총액에서 발주 확정과제 소요추정 예산 제외 25,000만원

⇒ 인권 사회단체 제안 사업

3. 사업기간

- 2003.3. ~ 2003. 11.

4. 공모 방식

- 공개 경쟁 방식

5. 응모 자격

-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자

6. 사업 운영 및 심사

- 실태조사 사업 총괄 기구로서 ‘실태조사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인권위 내외 인사 10인 정도를 추진위원으로 위촉
- 과제 심사
 - 실태조사 추진위원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로 심사단 구성
 - 요건심사, 서류심사, 3차 구두심사

7. 추진 일정

- 2월 중 실태조사 발주과제 선정
- 3월 초 실태조사 사업공고
- 3월 말 실태조사 담당자(단체) 선정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표회는 과제별로 결정

8. 논의 사항

-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민간 경상 보조사업

(국내협력과)

I. 기본개요

1. 목 적

- 인권시민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으로 상호협력 관계 구축
- NGO의 전문성 제고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 기반 강화

2. 세부 내용

- 사업기간 : 2003. 3. ~ 2003. 10.
- 총사업비 : 20,000만원
- 공모분야 : 인권옹호와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공모 사업범위
 - 인권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사회권 영역,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 등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등과 연대강화를 위한 사업
 - 국제회의 유치 및 참가, 국제인권보호증진 활동 등
 - 인권활동중 국제조약과 관련된 시의성 있고 국민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
 -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학술회의, 국제인권조약 교육사업 등
 - 인권증진 관련 지역사회연대 등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가 큰 사업
 - 전국인권활동가 대회, 인권활동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제외 대상사업>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공모방식 : 공모사업 범위 내에서 단체가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 공모
- 사업선정·지원금액 결정 방법

- 「단체협력사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관련학계(3인) + 민간전문가(4인, 비운동단체)
 - 제1단계 심사(요건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부적격 단체 확정
 - 제2단계 심사(내용심사)
 - 심사채점항목에 의한 사업별 심사(사업적합성, 독창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총점을 토대로 지원사업 · 금액 결정

3. 추진 일정

- 2. 17 ~ 2. 28 : 사업공모 및 사업신청서 교부 · 접수
- 3. 3 ~ 3. 8 : 사업심사 및 선정
- 3 ~ 10월 : 사업설명회 개최,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시
- 6월 : 중간평가 및 현지답사
- 11월 :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서 접수 · 정산

II. 주요 논의사항

1. 보조금액 교부방식

- 기준
 - 소액다수(3~5백만원 정도) / 적정액 소수(1천만원 내외) / 상·하한액 설정
 - 지역 인권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할당제 도입 여부
- 위원회(안) : 1천만원 내외, 지역 안배 고려

2. 공모사업범위

- 공모사업범위(안)에 대한 단체의견, 추가 공모사업범위 등

3. 심사위원 추천

- 위원회(안)
 - 공모분야와 관련되어 최근 1년간 연구실적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활동가
 - 단체추천을 받아 선정(단체에서 적극 추천 협조 요망)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국내협력과)

I. 기본개요

1. 목 적

- 생활속의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실질적 인권증진 및 의식 제고
- 실천적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권운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기여

2. 세부 내용

- 사업기간 : 2003. 3. ~ 2003. 11.
- 총사업비 : 12,500만원
- 공모분야 : 5대 분야(분야별 1~2개 사업)
예시)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청소년, 성적소수자, 여성
- 공모 사업범위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
 - 접근이 용이하고 실천프로그램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분야
 - 현재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인권운동 영역에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
 - 인권의식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며 시민들의 참여성이 높은 분야
- <제외 대상 사업>
 - 연구 및 학술행사, 실태조사, 공개강좌, 1회성 홍보행사
- 공모방식
 - 인권단체의 창의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위해 해당분야(영역)만을 미리 지정하되, 세부 주제는 신청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응모
- 응모자격 :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위원회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제외

-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민간전문가(4인) + 위원회(3인)
 - 제1단계 심사(요건심사)
 - 국내협력과에서 심사, 신청요건 해당 및 저촉 여부
 - 제2단계 심사(내용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사업계획서에 의한 내용평가(심사채점기준에 의거)
(사업적합성, 독창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제3단계 심사(면담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요건 및 내용심사 통과과제에 한함), 사업관련 사항 질의 · 응답, 최종 사업선정 결정

3. 추진 일정

- 2. 17 ~ 2. 28 : 사업공모 및 사업신청서 교부 · 접수
- 3. 3 ~ 3. 8 : 사업심사 및 선정
- 3 ~ 11월 : 계약체결 및 사업실시
- 6월 : 중간평가
- 12월 :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서 접수

II. 주요 논의사항

1. 공모분야 선정

- 위원회 선정기준(안)
 - 인권현안 중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구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분야

<예시> 5대 분야(분야별 1~2개 사업)

-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청소년, 성적소수자, 여성

2.심사위원회 민간전문가 추천

- 위원회 기준(안)
 - 공모분야와 관련되어 최근 1년간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인권관련 운동경력이 있는 활동가
- 선정방식
 - 단체추천을 받아 선정(단체에서 적극 추천 협조 요망)

인권시민단체와의 커뮤니티 운영

(국내 협력과)

1. 추진배경

- 인권단체 활동가와 인권위의 상호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자 그룹의 정기적인 모임 개설 필요

2. 사업내용

- 시기 : 정례화(분기별 또는 의견 수렴 후 월, 격월 등 검토)
- 장소 : 배움터 (필요 시 별도 장소 검토)
- 추진내용
 - 주요 인권단체 실무 책임자와의 정기적인 모임 개최
 - 협력사업, 간담회 개진내용, 교육프로그램 점검 등 개선책 모색
 - 단체들의 인권정책 모니터링 내용 등에 대한 의견교류
 - 쌍방향 on-off line 채널 동시 가동
 - 인권위 포털사이트 내에 활동가 커뮤니티 운영

3. 주요 논의사항

- 논의의제 등 진행방안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 내 협 력 과)

1. 추진배경

-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인권관련 상담, 교육 등에 필요한 실무력 향상을 돕기 위해 인권단체와 공동기획, 진행

2 사업내용

- 실시 : 년 1~2회 또는 매 분기별
- 실시방법
 - 수도권, 지방 3개 영역별(대전·광주·대구) 상근 활동가 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 교육 프로그램내용 편성은 단체들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 후 단체 활동가들과 공동기획 운영
 - 인권이론 교육, 자유권·사회권 주제 운동 실천사례 공유, 국제 연대운동의 활성화 방안, 민원처리 등 단체실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 실무정보 등
 - 강사는 전공자(NGO 학과 교수), 변호사, 전문성을 갖춘 단체 활동가 (인권교육담당관실의 '인권강사양성교육'과 연계추진 검토)
- ※ 개최횟수, 실시방안 등은 단체들의 의견 수렴 후 확정

3. 주요 논의사항

- 교육내용, 참가대상, 강사선정 등 운영일반

국가인권위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권단체와의 의사소통 방안

(정보화담당관실)

I. 개요

1. 목적 및 개선방향

가. 목적

-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권관련 당사자 간의 정보공유와 인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활동 현황, 인권상담 및 진정처리 서비스와 인권교육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인권 홈페이지를 구축

※ 기존 홈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 인권관련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의 자료 현행화
- 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사업진행현황 게시
- 인권관련 각종 보고서, 인권교육 자료 등 정보 공유
- 인권정책 제안 창구와 주제별 토론방이나 커뮤니티 기능
- 진정처리 진행 상태(상담, 조사, 의결) 확인 등

나. 홈페이지 개선 방향

- 주제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사이버 인권 커뮤니티 개설·운영
- 다양한 인권자료를 축적, 검색, 유통을 위한 전자 인권자료실 운영
- 위원회의 인권활동, 인권정책, 추진 사업을 공개
-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인권정책제안 접수
- 시각장애우, 어린이, 외국인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운영체제 개선

2. 세부 내용

가. 홈페이지 주요 기능

- 아우름터(커뮤니티) 기능
 -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인권과 관련한 사이버모임의 개설
 - 다양한 인권 현안 중 특정한 범위의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의 구성 지원
 - 시민단체의 주장, 홍보, 행사일정 등을 위한 대자보 운영
 - ※ 아우름터는? '여럿을 조화하여 한덩어리나 한판이 되게 하다'라는 아우르다라는 우리말에서 착안
- 인권 관련 정보의 효율적 생산과 유통 기능
 - 국가인권위원회 소장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기능 제공
 - 인권관련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 생산되어진 정보가 체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공간 제공
- 위원회의 인권활동, 인권정책, 추진 사업 공개 기능
 -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 위원회와 사무처 활동 공개
 - 신속한 보도자료 게시와 위원회 행사 일정 공개
- 정책 참여 기능
 - 정책제안 메뉴를 두어 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현행 법령과 제도의 반 인권적 요소를 찾아내고 시정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와 시민단체의 제보 코너 운영
- 소외계층을 위한 기능
 - 시각장애우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하여 소리와 큰 글자로 구성
 - 어린이에게 걸 맞는 콘텐츠 구성으로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 배움터 사용 안내 및 신청 접수 기능

나. 홈페이지 주요 메뉴의 정보기능

○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회의 사업과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위원회의 일반 현황에 대한 소개, 위원회 관련기사와 보도자료를 제공
- 국민들의 인권현안에 대한 견해를 수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와 '인권정책제안'란을 제공

→ : 정보제공 방향

주요 메뉴	구성내용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003년 위원회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자료 열람	→	
	2003년 위원회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자료 열람	→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각급 위원회 의사일정안내	→	
	사무처 각 부서 추진사업안내	→	
위원회구성	전원위원회 구성 및 업무 소개 / 위원소개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업무 소개 / 위원소개	→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 소개 / 위원소개	→	
	사무처 각부서 구성 및 업무	→	
위원회소식	위원회연혁 / 연혁 관련 기사	→	
	위원회배포보도자료	→	
	위원회관련기사	→	
	위원회 행사안내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책제안을 받습니다안내 / 정책제안 쓰기	←	
	여러분의 의견은? / 여러분의 의견 참여하기 / 결과보기 / 지난 결과보기	↔	
	위원회 약도	→	
	담당업무검색 / 부서별검색 / 성명검색	→	
	담당자 지정을 통한 위원회 업무문의(Q&A)	↔	

○ 『인권자료실』

-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주제에 따라 분류된 인권정보를 검색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들을 제공하는 창구 역할

주요 메뉴	구성내용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자료실안내	자료실 소개	→	
	자료실 이용 방법 및 자료복사 서비스 신청	↔	
	자료실 관련 FAQ	→	
인권정보서비스	인권정보	→	
	인권관련법령	→	
	인권관련기사	→	
	국제인권자료	→	
	소장자료검색	↔	
위원회발간자료	인권만화 / 인권동화 / 공무원인권교육교재 / 인권존중직무가이드 / 인권일반개론서 / 인권실태연구보고서 / 인권백서 / 법령연구 / 통계자료	→	
	뉴스레터	→	
	인권위원회 공보문 게재	→	
영상자료	위원회관련 영상자료	→	
	인권관련 영상자료	→	

○ 『진정상담실』

- 인터넷을 통해 침해와 차별에 대하여 상담하고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요메뉴	구성내용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진정상담안내	진정처리절차안내 / 진정사건처리사례 / 사례 검색	→	
	상담안내 / 상담사례 / 서식자료실	↔	
인권상담	진정상담게시판	↔	
	화상상담	↔	
진정신청	진정서작성	↔	
진정조회	진정조회	↔	
자주하는질문(FAQ)	진정처리절차FAQ / 진정신청FAQ / 인권상담FAQ	→	

- 『아우름터』 (커뮤니티)
 - 국민들에게 인권과 관련한 토론과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인권의식을 신장
 - 아우름터를 통해 다양한 인권정보 공유와 견해를 주고 받을 수 있음

주요메뉴	구성내용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모임 안내와 찾기	새 모임 만들기 / 우수모임 / 아우름터 자유게시판 / 모임 이용안내	↔	
나의 가입 모임	내가 가입한 모임 보기	↔	
모임 갈래	자유모임 / 포럼모임	↔	
대자보	대자보 개설 / 관리	←	
인권 SOS	SOS 개설 / 관리	↔	
자유토론방	사건토론방 / 주제토론방 / 토론제안 / 토론관리 / 토론참여 / 자유게시판 / 이용안내	↔	

3.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가. 인권커뮤니티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인권 주요 관심분야별 대상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구성
 - ※ 인권 커뮤니티 구성<예>
 - 5대차별(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커뮤니티
 - 인권강사 커뮤니티(현재 온라인상에서 운영 중에 있음)
 - 구금시설연구모임
 - 장애인이동권연대 모임
 - 국제인권조약 연구 모임
 - 외국인노동자 권리 찾기 모임
 - 인종차별 연구 모임
 - 어린이 인권 연구 모임
 - 탈북자 인권 연구 모임
 - 제외동포법 연구 모임
- 커뮤니티 관리 원칙을 작성하여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제회원을 관리하여 커뮤니티의 질을 확보
- 인권현안 토론 안건을 제시하고 저명한 인사가 토론에 참여토록 하여 자발적으로 토론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 후 온라인 상에서 계속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함(회의자료, 회의결과 보고서 등 정보 게시)

- 커뮤니티의 정회원에게는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자료
(예 ; 이메일진, 웹진, 연구보고서, 공보 등)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
-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만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부서의 협조체제 유지

나. 인권정보 공유를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의 일방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인권 정보와 건전한 견해를 공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
 - 국제인권기구·단체로부터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해외 인권 정보 창구역할
 - 시민단체에서 필요한 국제인권정보를 접수받아 그 정보를 획득하여 공유(인권자료 추천 코너 운영 등)
 - 시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권자료를 접수받아 게시
 - 시민단체에서 분야별 인권전문가와 단체를 추천할 수 있는 코너 운영

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의 강화

- 정책제안 메뉴를 비롯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하여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창구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차별금지법 관련 18개영역 차별피해 사례 접수 운영
 - 국내법의 반인권 법령 제보 코너 운영
- 시민단체의 세미나, 이벤트 등 행사 일정을 게시 할 수 있는 코너 운영

라. 홈페이지 운영 체계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각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 운영
- 인권위활동 등 생성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즉시 등록 체계 구축
-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홈페이지 운영 평가 실시

- 홈페이지 담당자 모임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4.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2002.11 ~ 2003.05
- 홈페이지 1차 부분 개통 서비스 실시 : 2003년 3월 중순
- 커뮤니티 운영규칙 제정, 회원모집 : 2003년 5월
- 홈페이지 2차 완전 개통 서비스 실시 : 2003년 6월

II. 주요 논의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예) 시민단체 일정표 등
2. 시민단체에서 보유한 인권관련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3.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의견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커뮤니티 모임은?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치는?

인권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디지털화를 위한 협력방안

(인권자료실)

I. 기본 개요

1. 목 적

- 인권정보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통한 대 국민 인권정보서비스 강화
-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인권정보 자료의 공유 및 이용 활성화

2. 세부내용

- 인권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자료의 공유
 - 인권관련 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활동
 - 단행본/사건,역사자료/단체 발간자료/연구논문/세미나 자료/현장자료 등
 - 인권시민단체와 네트워크 체제를 형성하여 인권자료실의 자료 수집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반영
 -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연구자, 일반인 등에게 인권자료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인권자료실 사서와 각 단체의 자료담당자간 상시 업무 협력체제 구축
 - 전문적인 연구와 현장 활동에서 산출되는 인권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담당자간 업무 협조 필요

- 국내외 인권관련 자료 및 각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체계화하고, 보존하며 디지털화하여,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인권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작업에 인권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3. 추진일정

- 2 ~ 12월
 - 인권자료실 소장자료 서지DB구축 작업 및 발간물 원문 DB구축
 - 인권 시민단체 실무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
 - 인권관련 자료(역사물)의 디지털화 작업 진행

II. 주요 논의사항

- 인권정보자료 수집·처리·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구체적인 협력방법 및 활용 방안
- 인권시민단체 및 활동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인권정보 자료의 정리 및 효과적인 디지털화 방안